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83
------	-----

2023. 09. 04.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0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06월 0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9.0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1. 제안이유

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민간 역량을 엮어내는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지역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판로 확대, 전문적인 인재 양성 등 체계적

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사무로써,

-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통·폐합을 통해 이원화된 사회적경제 정보와 지원의 통합,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신규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시설관리+사무)
- 위탁기간 : 3년(2024.1.23. ~ 2027.1.22.)
- 조직인력 : 총 5팀 20명(센터장 1명, 팀장 5명, 팀원 14명)
- 위탁시설
  - 명 칭 :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지상5층~지상 6층)
  - 위 치 : 구로구 개봉로23길 10
  - 규 모 : 연면적 4,872㎡(지하2층~지상6층) 중 1,093㎡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 공정경제담당관)
  - 건축시기 : 2021.4월(부지-기부채납, 건물-서울시 건축공사)
  - 시설현황 및 사용계획

구 분	현재 사용용도	면적(㎡)	관리부서	비 고
1층, 2층	기업 입주공간 (3개)	1,12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3층, 4층	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 (서울개봉솔루션앵커)	1,295	서울시 (뷰티산업과)	
5층, 6층	기업 입주공간 (12개)	1,093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위탁 센터 사용시설

- (5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공간 및 공용 공간
  - (6층) 교육장,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제공, 설립신고 지원
    -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조합원, 임직원 교육
    -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다. 위탁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간의 상생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무로 인사

이동이 빈번한 공무원 직접수행 보다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민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여,

- 사회적경제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sup>1)</sup>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종료(2024.01.22.)에 앞서, 두 센터의 신규 통합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sup>2)</sup>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나. 신규위탁 대상사무의 현황과 추진 배경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 2014년부터

---

1)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협동센터”)를 설립·운영 중임.

### < 서울특별시 사경·협동센터 운영현황 >

구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개 소 일	2013. 4. 11.	2014. 3. 1.
주요기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원	협동조합 설립 및 성장지원
수탁기관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위탁기간	3년(2021.1.23.~2024.1.22.)	3년(2021.1.23.~2024.1.22.)

- 먼저 사경센터는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과 인재 양성, ▶모델발굴과 사업화 지원,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컨설팅·평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활동을 지원함.
- 그리고 협동센터는 ▶설립·운영 상담, ▶설립 신고 지원, ▶설립 예정자·조합원·임직원 교육 등 협동조합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을 지원함.

### <사경센터·협동센터 주요업무>

구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목적	서울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활동을 지원	서울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 성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전문기관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인재 양성</li> <li>• 사회적경제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li> <li>• 사회적경제조직 모니터링, 컨설팅·평가</li> <li>•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허브 조성 운영</li> <li>•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및 운영</li> <l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전문 상담</li> <li>•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li> <li>• 협동조합 설립예정자·조합원·임직원 교육</li> <li>• 협동조합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li> <li>•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홍보</li> <li>• 협동조합 민간 네트워크 및 지역 단위</li> </ul>

구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시장조성 지원</li> <li>•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관리</li> </ul>	협동조합 활동지원

- 한편 동 센터들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사경센터와 협동센터는 업무와 기능, 대상과 범위 등이 유사·중복됨에도 불구하고 분리·운영되고 있으므로 중간지원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한바<sup>3)</sup> 있음.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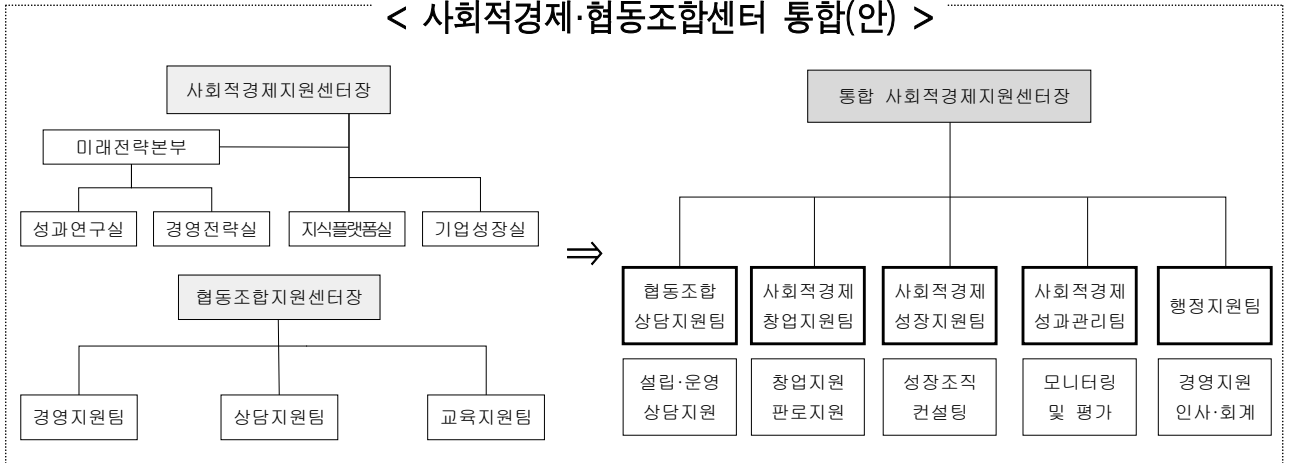
- 업무와 기능, 대상과 범위 등 유사·중복 사례
  - 업무적 측면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원
  - 기능적 측면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과 성장지원 중점 추진
    -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 상담을 중점으로 운영, 대부분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포함

- 이에 서울시는 2022년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경센터와 협동센터를 사경센터로 통합<sup>4)</sup>하여 일원화하기 위해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임.

3) 2021년 市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적사항(2021.10.25~11.19)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간의 기능 중복을 지적하면서 연구용역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중간지원조직 효율화 방안 마련할 것을 제안함.

4) 상담지원 중심의 협동조합지원센터 기능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흡수

### < 사회적경제·협동조합센터 통합(안) >



####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사경센터와 협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하여 역량있는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하여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임(2024년 위탁금 29억 7천 3백만원).
- 서울시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과 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교육 ▶ 협동조합 설립 상담과 정보제공, 설립신고 지원, ▶ 협동조합 창업 지원과 컨설팅 등의 사무를 수행할 예정임.
- 따라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민간 전문기관에 동 센터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원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경센터와 협동센터는 최초 위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계약, 재위탁을 거쳐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서 계속 수탁 운영 중임.
- 사경센터는 최초 위탁 후 보조금사업, 용역사업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여 비효율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쇼핑몰인 ‘함께누리몰’,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제품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플랫폼인 ‘캐빈닷넷’의 운영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실적을 나타냄.
- 또한 협동센터는 협동조합 종합상담서비스와 실무능력 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기여율 목표치(30%)를 상회하는 32.1%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sup>5)</sup>.
- 그러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속도는 현저히 둔화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sup>6)</sup> 또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 최근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수 >

(단위 : 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18년 대비)
계 (전년 대비)	4,335 -	4,983 (14.9%)	5,627 (12.9%)	6,140 (9.1%)	6,194 (0.9%)	42.9%
사회적기업	626	880	1,003	1,176	1,013	61.8%
마을기업	94	100	113	117	120	70.2%

5) 2022년 258개 설립 협동조합 중 83개 협동조합이 서비스 이용

6)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2018년 31억 2천만원 → 2021년 21억 1천 6백만원, △32.2% 감소), 마을기업 평균 매출액(2018년 8억 8천 7백만원 → 2020년 6억 5천 6백만원, △29.6% 감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율 (18년 대비)
협동조합	3,468	3,863	4,384	4,718	4,929	42.1%
자활기업	147	140	127	129	132	-10.2%

- 특히 협동조합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립 속도가 점차 정체되고 있고, 매출과 조합원 노동자 규모 등도 계속 감소<sup>7)</sup>하고 있으며, 협동센터와 사경센터 간의 기능 중복과 정보 미교류로 인한 과다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현황 >

(단위: 개)

구분	2012~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3,468	3,863	4,384	4,718	4,929
일반협동조합	3,138	3,438	3,761	3,991	4,121
사회적협동조합	330	425	623	727	808

- 더욱이 사경센터의 수탁기관인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민간 위탁 지도점검에서 일부 행정업무를 외주 용역하고 관련 수수료를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등 목적 외 예산을 집행하고(2018년), 단독 입찰시 재공고 없이 사업자를 선정(2018년, 2019년)하는 등 계약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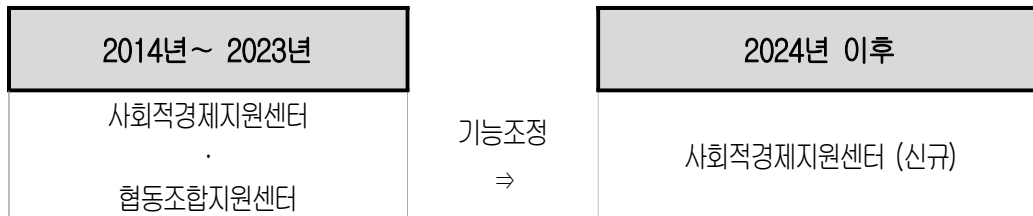
- 또한 2022년 서울시 특정감사에서는 사경센터에서 수행한 업무 중

7) 2021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이 줄었다'가 39.9%, '변함없다'는 34.2%로 점차 감소하였고, 조합원 노동자 현황도 2014년 노동자 수 평균 11.3명에서 2020년 1.4명으로 급격히 감소함.

▶ 공정성 저해, ▶ 민간위탁 사무의 부적정 처리, ▶ 유사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 ▶ 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음(참고자료).

-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이원화된 센터의 정보 통합, 조직과 인력의 집중을 위해 센터 통합 방안을 마련한 것임.
- 그리고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폐합하고 현재의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2021년 건립된 구로구 개봉 비대면 산업클러스터로 2023년 9월에 이전 예정임.

### < 통합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안 >



- 따라서 동 동의안은 기능이 중복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의 혼선을 줄여 예산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와 통합적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이 요구

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883
----------	-----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3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위탁사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민간 역량을 엮어내는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지역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및 판로 확대, 전문적인 인재 양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하는 사무로써,
- 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통·폐합을 통해 이원화된 사회적경제 정보와 지원의 통합,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신규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시설관리+사무)
  - 위탁기간 : 3년(2024.1.23. ~ 2027.1.22.)
  - 조직인력 : 총 5팀 20명(센터장 1명, 팀장 5명, 팀원 14명)
  - 위탁시설
    - 명칭 :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지상5층~지상 6층)
    - 위치 : 구로구 개봉로23길 10
    - 규모 : 연면적 4,872㎡(지하2층~지상6층) 중 1,093㎡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재산관리관 : 공정경제담당관)
- 건축시기 : 2021.4월(부지 및 건물 - 기부채납)
- 시설현황 및 사용계획

구 분	현재 사용용도	면적(㎡)	관리부서	비 고
1층, 2층	기업 입주공간 (3개)	1,12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3층, 4층	기계금속제조지원센터 (서울개봉솔루션앵커)	1,295	서울시 (뷰티산업과)	
5층, 6층	기업 입주공간 (12개)	1,093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위탁 센터 사용시설

- (5 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공간 및 공용 공간
- (6 층) 교육장,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제공, 설립신고 지원
- 협동조합 설립예정자, 조합원, 임직원 교육
-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다. 위탁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간의 상생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무로 인사이동이 빈번한 공무원 직접수행 보다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민간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여,

- 사회적경제 분야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1조

제11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분별 지원기관)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 육성을 위하여 그 육성업무의 일부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필요

- 2024년 예산편성(안) : 2,973백만원

※ 2023년 예산편성(기준) : 3,119백만원

- 제3차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2024년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으며,
- 제3차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은 '23년 9월중 수립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 작성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지관우(☎ 2133-5485)